

KIEP

오늘의 世界經濟

World Economy Update

제 05 - 10호 / 2005년 4월 15일 발간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 미국·EU 사례와 시사점

작성자: 임혜준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him@kiep.go.kr ☎ 3460-1158】

박혜리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원

【hrpark@kiep.go.kr ☎ 3460-1029】

主要內容

- 지난 3월 14일 『무역조정지원법(가칭)』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 지원제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미국은 무역조정지원(TAA)을 제정하여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 농어민을 지원하고 있으며, EU는 경제통합에 따른 회원국·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을 마련함.
- 우리나라도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는 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차원이 아닌 경제주체의 개방적응 지원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 무역자유화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지원제도를 지향해야 함.
 - 제도 마련 시 고용보험, 중소기업 지원제도, 한-칠레 FTA 기금 등 기존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 미국·EU 사례와 시사점¹⁾

I. 머리말

- 우리나라는 현재 WTO체제 아래 진행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FTA를 통한 양자간 무역자유화를 추진 중임.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와는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일본, ASEAN, EFTA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그러나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없이 우리나라가 FTA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대체로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반드시 경제 내 모든 부문(sector)이 그러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님.
 - FTA 상대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수출 확대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비교열위 산업은 값싼 수입품 증가로 인해 매출 및 고용의 감소 등의 피해를 보게 됨.
 - 또한 이러한 비교열위 산업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음.
- 그러므로 FTA 등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 및 계층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 및 계층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원제도의 마련은 대내적으로 FTA 등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

1) 본고는 임혜준·박혜리(2004)에 기초함: 『주요국의 FTA 피해산업 대책』 경제연구총서 2004-378, 대한상공회의소.

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함.

- 지난 3월 14일 『무역조정지원법(가칭)』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 지원제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아래에서는 미국과 EU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러한 제도가 우리나라 유사 제도 마련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봄.

II.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1. 무역조정지원의 개요

- 미국은 무역자유화 및 FTA 추진에 따른 피해 지원제도로 무역조정지원(TAA)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 TAA제도는 「19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제정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최근 「2002 무역법」에서 그 적용범위와 지원범위가 확대됨.
- 그런데 TAA제도의 입법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미 행정부가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대신 의회에게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 지원대책으로 TAA를 제공함. 다시 말해, TAA는 행정부가 무역자유화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에게 마련해 준 일종의 보상책(quid pro quo)이라 할 수 있음

2. 무역조정지원의 종류 및 지원대상

- TAA는 크게 지원대상을 기업, 노동자, 농어민으로 나누어 세 개의 TAA로 각각 운영 (표 1 참고)

〈표 1〉 미국 무역조정지원(TAA)

구분	기업TAA	노동자TAA	농민TAA
시행시기	「1962년 무역확대법」 1974년 및 2002년 개정	좌 동	「2002년 무역법」
목적	FTA 등 무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를 지원		
	• 무역자유화로 매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한 기업지원	• 무역자유화로 수입증가와 생산기지가전으로 실직한 노동자 지원	• 수입 증가로 인해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 지원
담당기관	• 상무부 경제 발전청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 노동부 고용 훈련청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농림부 외국농산물서비스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지원대상	기업	노동자	농어민
지원형태	•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의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공동 부담	• 직업훈련, 소득지원, 구직 및 이사비용, 건강 보험료 세금공제	• 새로운 상품 및 시장, 대안 사업 개발 등을 위한 기술 지원, 소득지원, 직업훈련
운영성과	• 기술지원: 기업경쟁력 상승	• 소득지원: 성과 불분명	2003년 실시로 성과는 아직 불분명함

자료: 저자 작성

□ 기업TAA는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매출, 생산, 또는 고용 등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기술지원을 제공함²⁾.

- 대개 TAA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술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절반을 상무부와 나누어 부담하게 됨.

□ 노동자TAA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실업을 당한 노동자를 지원함.

- 해당노동자는 구직서비스, 직업훈련, 소득지원, 이사 및 구직비용, 건강보험료의 세금공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음.

□ 농민TAA는 수입증가로 인해 생산물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감소한 농어

2) 기업TAA 지원 사례: 부록 참고.

민을 지원함.

- 농민TAA는 새로운 상품개발, 신규시장개척, 대안사업 마련에 기술지원을 하고, 소득지원(TRA) 및 재취업 직업훈련도 제공함.

3. 무역조정지원의 평가

- 기업TAA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생존 확률, 매출, 그리고 고용 등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 TAA가 수입경쟁에 의해 타격을 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 됨.
- 기업TAA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TAA 승인 후 5년차 누적 폐업율은 16.2%(생존율 83.8%)인 반면,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누적 폐업율은 29.3%(생존율 70.7%)로 조사됨.

<표 2> 승인 후 누적 폐업율

승인 후 연차	지원 받은 기업		지원 받지 않은 기업	
	기업 수	전체대비 비율	기업 수	전체대비 비율
1	21	5.1	53	14.1
2	38	9.2	71	18.9
3	48	11.6	85	22.6
4	61	14.7	96	25.5
5	67	16.2	110	29.3

자료: The Urban Institute. 1998. *Effective Aid to Trade-Impacted Manufacturers*.

- 그러나 기업TAA에 대한 적은 예산편성(연간 1천 6백만 달러)으로 현재 TAA 승인을 받고도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어 향후 예산 증가의 필요성이 제기됨.
- 노동자TAA는 무역자유화로 실직한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에 목적이 있으나 그 성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을 받는 노동자보다 TAA의 소득지원을 받는 노동자가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었고, 재취업 시 받는 임금도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 i) 소득지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실업기간이 길어짐;
 - ii) TAA대상 노동자는 일반 실업수당대상 노동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짐. (예: TAA대상 노동자는 주로 단순 기술(low-skilled labor)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이 어려워 실업기간이 길 수 있으며 재취업 시 임금도 낮을 수 있음)
- 그러나 TAA의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는 일반 실업수당 노동자보다 평균적으로 취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III.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1. 유럽구조기금의 개요

- 유럽구조기금은 유럽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국·지역·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1958년에 창설됨.
- 동 기금은 경제통합으로 피해를 입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보조하는 역할보다는 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취약산업이나 낙후된 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유럽공동체(EU)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구조기금은 지원할 프로젝트의 선별과정이 엄격하고 경쟁적이어서 경제통합과정에서 낙후된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는 연합차원의 보조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지역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는 능동적인 입장을 취함.
- 유럽구조기금은 현재 제1차 프로그램³⁾(1994~99)을 마치고 제2차 프로그램(2000~06)을 진행 중임.

3) 창설시기가 서로 다른 4개의 기금으로 구성된 유럽구조기금은 각 기금별로 개별 운영되어 오다가 1994년부터 통합적으로 예산과 지원계획을 세워 운영하기 시작함.

2. 유럽구조기금의 종류4)

- 유럽구조기금은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수산업재정수단기금 등 네 가지 기금으로 구성됨(표3 참조).
-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EU내 사회 불균형의 해소를 목표로 노동시장의 동등한 기회 보장, 직업훈련제도 개선, 숙련노동자의 육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도 등을 지원함.
-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농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농촌지역의 개발을 목표로 농업 설비 현대화와 생산품질의 제고 등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정착비와 직업 훈련, 농업환경정책, 농산물 마케팅, 농업관광상품개발 등을 지원함.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EU 내 저개발 지역과 사양산업 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도시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짐.
- **수산업지원재정기금(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FIFG)**: EU 회원국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근대화, 선박 폐선 및 업종전환, 수산자원 보호, 개별 어민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기금이 지원됨.

4) 유럽구조기금 사례연구: 부록 참고.

〈표 3〉 유럽구조기금

구분	유럽사회기금 (ESF)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 (EAGGF)	유럽지역개발기금 (ERDF)	수산업지원재정기금 (FIFG)
시행시기	1958년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			
	1958년	1962년	1975년	1992년
목적	유럽연합 내 국가 및 지역간 균형적 경제사회의 발전			
	• 고용기회 확대, 생활수준 향상	•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농촌 개발	• 지역간 불균형 해소 (저개발 지역, 사양 산업지역 경제개발)	• 수산업부문 구조조정과 어촌개발
담당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집행위원회: 구조기금 운영의 결정권을 행사 • 구조기금 위원회 및 각 기금별 위원회: 구조기금 운영 자문 • 경영기관: 각 회원국별 구조기금 운영의 실질적 담당기관 • 감독위원회: 각 회원국별 구조기금 운영 자문 및 감독 			
지원대상	•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사양산업 지역, 구조조정 필요지역 등 지역별 및 공동체별 지원			
지원형태	• 프로젝트 수행비용을 직접 지불하나 지원단체와 유럽공동체가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 성격			

자료: 저자 작성

3. 유럽구조기금의 평가

- 유럽구조기금은 EU 전체 예산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낙후지역 개발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여 역내 지역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음.
- 유럽구조기금의 엄격한 사후 평가시스템은 프로젝트별로 중간·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다음 사업기간의 기금분배를 결정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의 효율성을 높임.
- 유럽구조기금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제도가 아닌 정책의 재정수단으로 유럽공동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정책, 지역개발정책, 수산업보조정책, 구조정책 등과 맞물려 계획적으로 운영됨.
-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구조기금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는 달리 각 회원국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구조기금분배에 영향을 끼쳐왔음.

- 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과거 구조기금 개혁 때 마다 대두된 문제로 구조기금의 가장 큰 과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각 기관마다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회원국과 협동기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

IV. 미국·EU 지원제도의 시사점

- 미국 TAA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EU의 구조기금은 경제통합으로 인한 회원국·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좀 더 포괄적인 지원제도라 할 수 있음
- 미국·EU의 피해 지원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도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 한-칠레 FTA경우에서처럼 임시방편적으로 마련된 지원대책은 오히려 FTA 피해 당사자들이 미래 FTA 체결 시 반대하면 언제나 보상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추기므로 지원대책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함.
 - FTA 피해 지원제도는 개방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개방에 대한 경제주체의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농업 등 특정 부문에 제한된 지원(예: 한-칠레 FTA 농업지원 특별법)이 아닌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함.
- FTA 등 무역자유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지원제도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의 경우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는 아니지만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재생법을 제정하였음. (부록 참조)

□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벤치마킹해 볼 수 있음.

<표 4>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 벤치마킹 대상

대상	벤치마킹 대상	비고
기업	기업TAA	기술지원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 성격
노동자	노동자TAA	소득지원 지급기간은 직업훈련기간과 연계할 필요
	유럽사회기금의 창업컨설팅 프로젝트	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농어민	농민TAA	새로운 상품 및 시장, 대안사업 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원; 직업훈련
	유럽지역개발기금 및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의 농촌관광사업 프로젝트	농촌 활성화에 기여

자료: 저자 작성

□ FTA 등 무역자유화 피해 기업의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기업TAA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할 수 있음.

- 기업TAA와 유럽구조기금처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비용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태의 지원제도는 해당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일 수 있음.

□ 노동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미국의 노동자TAA와 유럽사회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컨설팅관련 프로젝트를 고려할 수 있음.

- 노동자 지원의 경우 소득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득지원 지급기간을 직업훈련 기간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유럽사회기금이 지원하는 프로젝트 중 창업컨설팅관련 프로젝트가 많은데 상기 직업훈련과 아울러 창업컨설팅서비스 제공도 고려해 볼만 함.
- 농어민에 대한 지원제도로 생산효율성 향상과 대안사업 발굴 등을 지원해 주는 농민TAA의 기술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며, 유럽구조기금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농촌관광사업⁵⁾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해 볼 수 있음.
- 유럽구조기금의 운영에서 기금의 성과과정이 중요시 되었듯이 우리나라 제도 마련에서도 사후 평가시스템과 성과에 따른 차후 기금지급시스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FTA나 동북아경제공동체처럼 경제발전이 서로 다른 나라가 FTA나 그보다 진보한 경제통합을 추진함에 따른 국가·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럽구조기금은 좋은 본보기를 제공함.
- 이상에서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미국과 EU의 유사 제도의 벤치마킹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위 제도들이 각기 자국 상황에 맞게 마련되었듯이 우리나라도 결국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향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서 우선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존의 법·제도와의 상충 및 중복 관계도 미리 검토해야 함.
- 고용보험, 중소기업 지원제도, 한-칠레 FTA 기금 등 기존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형평성 원칙에 따라 사양산업의 구조조정, 경기순환에 따른

5) 농촌관광사업은 문화유산 관광 상품 개발, 오래된 건축물의 숙박업소 개조, 관광 인프라(여가시설, 수영장, 캠프장, 산장 등) 확충, 역사적 유적 보수, 관광활동 관측 및 마케팅, 관광 서비스 공급자들의 연합 또는 협동조합의 결성 등을 포함.

피해 등 무역자유화 이외에 다른 이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확충도 염두에 두어야 함.

부 록

1. 기업TAA 사례: 신발제조업

- 69년 역사를 가진 신발제조업체인 브래드 풋 기어웍스(Brad Foote Gear Works)는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20% 감소하였으며 종업원의 해고도 있었음.
- 관할지역 무역조정지원센터(TAAC)에서 브래드 풋의 지원자격을 평가한 후, 상무부에서 국제품질표준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을 최종 결정함.
- 브래드 풋의 국제품질표준인증 획득 준비 및 감사에 필요한 총 비용 8만 달러 중 4만 달러를 TAAC가 지원하였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소개서 발간, 신발제조 소프트웨어 개발에 드는 총 비용 8만 달러 중 4만 달러도 TAAC가 추가 부담하였음.
- 지원을 받은 후 브래드 풋은 생산 효율성이 뛰어난 업체로 거듭남.
- 중간 관리체계를 생략함으로써 인하여 리드 타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앞당겨져, 전보다 6주나 빨리 상품들을 선적할 수 있게 되었음.

2. 유럽구조기금 사례: 사업지원 프로젝트

- 영국의 티시드(Teesside) 마을 경제는 오랫동안 ICI⁶⁾나 British Steel같은 대형산업에 의존해온바, 1970년대와 1980년대 이 회사들이 정리해고를 시작하자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음.
- 이에 따라 1995년 4월 티시드 트레이닝(Teesside Training)과 기업자문회의(Enterprise Council)가 신생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신기업전략(New Enterprise Strategy)이라는 사업지원 프로젝트를 제안.

6)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영국의 종합화학회사로 1926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55개국 200여 곳에서 5만여 개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 신기업전략은 지방단위 협력체와 신규 회사 설립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유럽지역개발 기금과 유럽사회기금이 총 비용인 400만 유로 중 120만 유로를 지원하였음.
- 동 프로젝트는 신규회사설립 컨설팅서비스로서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재정·기술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 특히 청년, 여성, 소수민족 구성원들을 위한 특별지원제도가 운영되었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가를 위하여 자본증여기금(Capital Grand Fund)⁷⁾이 지급됨.
- 동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총 1800개 회사를 지원하였고 32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와 티시드 마을의 부흥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동유럽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한 초기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임.

3. 일본 산업재생법

- 1990년대 말 일본은 버블의 후유증으로 과잉설비, 과잉채무, 과잉고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잉설비의 처리와 경영자원이용의 혁신을 통하여 수익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안(약칭: 산업재생법)을 제정함.
 - 2003년 4월에는 민관 공동투자로 주식회사형태의 산업재생기구를 설립하였으며, 동 기구는 산업재생법의 실행기구로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부실채권 처리 등을 통해 기업회생을 도와줌.
- 산업재생법의 주 목적은 과잉설비 처리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구

7) 매칭펀드 성격으로 50대 50 비율 이내에서 최대 3천 파운드까지 지원됨.

조조정 지원이며, 지원범위는 사업재구축과 창업 및 신사업개척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부표1 참조).

- 사업재구축은 모든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향후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사업 활동을 지칭하며 합병, 매각 등 사업구조변경과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사업을 지원함.
- 창업 및 신사업개척은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신규사업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개척을 지원함.

<부표 1> 산업재생법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안: 1999년 8월 제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설비 처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 구조조정에 장벽이 되는 세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담당기관/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경제산업성/산업재생기구, 일본정책투자은행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재구축과 창업 및 신사업개척 • 사업재구축: 사업구조변경, 사업혁신 • 창업 및 신사업개척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 금융지원 • 상·민법상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구축: 모든 기업 대상 • 창업 및 신사업 개척: 중소기업 대상

자료: 유관영, 산업연구원, 『일본의 기업구조개혁 지원책과 시사점』에서 재인용.

□ 산업재생법의 기업지원은 세제지원, 상·민법상 지원, 재정·금융지원 등을 포함함.

- 세제지원은 등록면허세 경감, 혁신적 설비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설비폐기에 따른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⁸⁾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을 포함

- 상·민법상의 규제 완화로 분사화 절차와 채무 이전 절차를 간소화 하고 회사 분할⁹⁾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킴.
- 금융지원에서는 저금리 용자를 제공함에 있어 일본정책투자은행 외에 민간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유도하고, 산업기반정비기금이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여 기업이 용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8) 과잉설비를 폐기 시 발생하는 손실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미래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켜줌.

9) 기업분할은 기존 기업이 주식 이전에 의해 모기업을 설립한 후 스스로를 분할하는 것임.